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-13호

「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월 10일

대전광역시의회 의장

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

1. 제정이유

최근 건설기계의 보관 및 주차 공간인 “주기장”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, 교통사고, 소음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

함(안 제4조).

다.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
라. 공영주기장의 설치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
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6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산업
건설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)

(전화 042-270-5132, FAX 042-270-5049, E-mail : kimnm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책무)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)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3조의2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
2. 공용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
3.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
4.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
5. 공영주기장 운영방안
6.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5조(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

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해당지역의 시민의견을 들어야한다.

② 공영주기장의 구조·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④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공영주기장의 설치지원)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건설기계관리법

제33조의2(공영주기장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영주기장(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(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설치·운영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미리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,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계획을 수립·변경하거나 인가·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